

## ① 개정 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선박에 대한 납세지 ※ 모든 선박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선적항 소재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은 정계장 소재지,</li> <li>-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주소지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동력수상레저기구 납세지 명확화 ① 동력수상레저기구 외 선박 (좌 동)  ② 동력수상레저기구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를 '등록지'로 규정

## □ 개정 내용

-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\*하게 등록지(소유자 주소지)로 개정

### \*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

- ① 선적항 소재지, 단,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지
- ②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은 정계장 소재지,
- ③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주소지

## □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

### | 지방세법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4조(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) 제10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